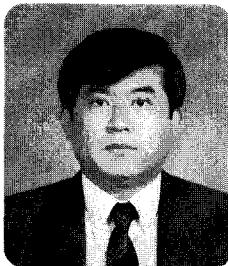


# 지적재산제도와 지적재산협회의 50년 역사속의 나의 추억(2)

- 화학과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

마쓰이 쇼지(松居祥二)

일본 변리사



김승호 · 변리사

## 목 차

- I. 지적 재산 협회와의 관계
- II. 법률개정의 추억
- III. 외국 상황 조사단의 회상
- IV. 특히 분쟁의 추억
- V. 인도에 대하여 생각한다
- VI. PIPA의 창립과 오즈음
- VII. 결론에 대신하여
- VIII. 후기(後記)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 譯者의 註

내가 松居祥二 변리사를 처음으로 만나본 것은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이 한창 논의 되고 있었던 1986년 10월경 서울에서였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으나, 같은 화학분야에서의 대선배 변리사라는 이유하나 민으로도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금년초 우연히 일본 지적재산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知財管理를 뒤적이던 중 지적재산협회의 50년 역사를 회고하는 松居변리사의 글을 읽고 느끼는 바 적지 않았습니다. 즉시, 헌글로 번역해서 시무실내의 동료 변리사들에게도 회람을 권유하였던 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왕 번역한 것이므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 지난 5월 일본 출장시에 松居변리사를 만나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더니, “나 이외에도 4~5인의 회고록이 같이 실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물이면 왜 나의 회고록을 택했는가?”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나의 전공이 화학임을 말씀드렸더니 훤히 한국 간행물에 게재해도 좋다고 승낙해 주셨습니다.

본 회고록을 보면 ① 일본은 벌써 1959년 개정시에 이를 특허협회 특허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었으며, ② 화학부문과 전기·기계 부문의 주장이 대립되었던 점 ③) 회화발명에서의 실시예와 청구범위의 관계, 기본발명과 선택발명 또는 이용발명과의 관계장립과성 ④) 일본에서의 과거 특허 문장 및 ⑤) 특허와 관련된 미·일관계 등 松居변리사의 과거 50년 특허경력이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우리들에게도 많은 반성과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松居변리사는 현재 70세 후반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AIPPI 일본부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변리사업에 종사하신은 물론 또 세계공업소유권 비교법학회를 이끌고 계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松居변리사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면서 譯者の 소개에 기쁨하고자 합니다.

### III. 외국 상황 조사단의 회상

해외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지적재산협회 업무의 하나로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정을 조사할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본인은 (1) 소화 42년(1967년) 3월30일부터 5주간에 이르는 공업소유권제도 조사단(특허청이 인선한 공업소유권 심의회위원 또는 전문 위원의 자격으로 공용여권에 의한 조사단임), (2) 소화 46년(1971년) 11월 27일부터의 물질 특허 조사단(특허협회와 일본화학협회 공동주최), (3) 소화 55년(1980년) 5월 27일부터의 아세안 조사단(변호사 법학박사 오노마사노베(小野昌延)씨가 고문으로 참가함), (4) 소화 56년(1981년) 7월1일부터의 방중(訪中) 대표단[일중(日中) 경제협회 사카이히로오(酒井拓夫)씨도 단원으로서 참가함]의 4개 조사단에 참가하였습니다. (1)과 (2)는 일본의 공업소유권제도 개선 발달에 이바지하는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과 (4)는 방문국에 있어서의 공업 소유권보호의 정황조사, 방문국이 제도개선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의 조사단은 단원을 각종분야에서 골고루 선임하였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협회외의 단원으로서는 지금은 돌아가신 야마시타 죠이치씨(山下朝一 : 당시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 후에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가 계셨습니다. 기타, 특허청에서는 나카모토 히로시(中本宏)씨, 변호사 데이자와 스스무(鶴沢普)씨, 나카무라 미노루(中村稔)씨, 고(故)나시무라 태루오(西村輝男)씨가 참가 하였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직장과 경험과 지식 분야가 다른 분들과의 5주간에 걸친 여행은, 서로 얻은 것이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협회 멤버만의 조사단 구성이 많으나, 상이한 분야의 분

들과의 혼성도 의의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조사단에는 변호사 오노마사노베(小野昌延)박사께서 고문으로 가담해주셨습니다. 이 조사단은 무슨 연유인지 본인이 단장으로 명받았으므로, 모방품의 거래가 빈번한 국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인 오노변호사의 동행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본인은 비행기가 이륙한 후 시찰일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대단한 하드스케줄로 되어 있어, 이 일정으로는 무리가 생긴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일정의 하루연장을 제안하여 단원의 동의를 얻은 후, 동행중인 트래블 에이전트 안내원에게 단원 소속회사의 양해를 얻을 것과, 양해를 얻은 후에 일정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긴끼(近畿) 일본투어리스트 도라노몽(虎/門)지점에서 와주었던 콘다(權田) 안내원은 처음에 난처해 하고 있었으나, 어떻게든 해봅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연장한 일정의 덕분으로, 아세안조사단은 충분한 조사와 그 분석 및 보고서의 정리가 가능했었습니다. 콘다 안내원의 능력은 단원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었으며, 요즈음도 동씨는 협회나 협회원 개인의 여행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여행의 일정을 출발후 변경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예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협회 조사단의 여행일정은 대단히 타이트하고 또한 하드스케줄이라고 기억합니다. 1991년 가을 PIPA 총회가 로체스터에서 있었을 때 지적재산협회의 구미방문단 단원들이 로체스터에 왔으나, 유럽에서 보스톤으로 오는 비행기가 늦어져서 보스톤-로체스터간의 연락편을 텁승하지 못해서, 결국 로체스터에 심야에 도착, 다음날 아침 워싱턴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같은 경우도 하루정도 일정을 길게 잡아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되는 예가 아니었

을까 생각합니다. 방중(訪中) 대표단에 참가한 것은 소화 56년(1981년)의 일이지만, 지적재산협회의 회장이신 신토사다카즈(進藤貞知) 미쓰비시 전기회장이 스스로 단장을 맡으셨을 정도로 열의에 찬 방중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특허제도를 판정할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방중단은 중국측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 일본의 경험, 국제적 정세등을 중국측에 전달한다는 또는 지도한다는 형식이었습니다.

신토회장 스스로 단장이 되어 중국을 방문하였던 만큼 중국측의 받아들이는 자세, 회합일정, 회합준비등도 지극히 완비되고,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마사키(方毅) 부총리를 인민대회당으로 예방하였으며, 한 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유익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중국측에서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 무형(武衡)씨 등의 방일이 이루어진 후에 중국은 특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방중단이 해낸 역할은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안하고 스스럼없이 만나 서로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10일간을 보냈으나, 북경에 오후에 도착한 그날 저녁 곧바로 중국의 고전극을 관람, 중국문화의 일면을 접해서, 다음날부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기(英氣)를 배양한 것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 IV. 특허분쟁의 추억

특허제도가 있으면 특허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적재산협회가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특허분쟁에 관한 추억은 특별히 지적재산협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관계한 최초의 특허침해사건은 소화 29년(1954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메리칸 시아

나미드 주식회사이며, 제품은 클로로로테트리사이클린이라는 항생물질이었습니다. 다케다야쿠ヒング이 그 제품의 수입 내지 제조판매를 행하고 있었던 관계상, 본인도 소송에 관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 1년만에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져 특허권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아메리칸 시아나미드사에 명령된 공탁금액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탁금액은 1억 5,000만엔이라는 고액이었습니다. 제넨테크사가 TPA사건의 가처분 승소로 3년전쯤에 공탁한 금액이 1억엔입니다. 소화 29년(1954년) 경의 1억 5,000만엔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수십억엔 이상되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 소송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결과를 보고, 일본의 제약회사의 연구 방침이 항생물질의 제조에 관한 한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항생물질을 별도의 방법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열의가 회복해지고, 새로운 항생물질을 제조하는 방향의 연구가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항생물질에 한해서는 일찍부터 물질특허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 모양새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취급하였으며, 담당 재판관은 특허사건을 많이 취급한 것으로 이름이 난 미야케마사오(三宅正雄)판사(당시)였습니다.

또 하나 추억에 남는 침해소송은 클로로프로마진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인은 피고가 된 다케다야쿠ヒング 자회사측의 보좌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비침해라고 판단되어 자회사는 영업정지를 면했었지만, 이 사건이 「우회방법은 특허침해를 구성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대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유명하게 된 사건입니다. A→D의 원고제법 특허에 대하여 피고는 A→B→C→D인 제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특허침해로서 고

소된 것입니다. 피고는 D 이외에 C까지도 의약 품으로서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무용한 우회는 아니라고 재판소에서 판단하여 그 결과 비침해로 되었습니다. 만약 C가 그 자체로서 의약용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 불찬성하는 비판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약분야의 침해소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혀 소송은 감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기술진보가 계속될 것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분야에서 특허되는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일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균등론에서 일본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위원회의 심판결에 연구보고를 자재관리에서 흥미있게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으나, 유럽, 미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취급되고 있어 흥미가 많습니다. 지적재산협회의 활동중심은 특허권의 취득과 제3자에 의한 특허권 취득의 저지, 라이센싱에 관한 문제이며, 권리침해소송은 상기 3가지의 활동에 비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인 일에 속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타권을 행사하여 법정에서 싸운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라이센스 공여라는 형태로의 해결이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이 침해인지 비침해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므로 침해나? 비침해나?, 즉 혹이냐? 백이냐?의 판결밖에 낼 수 없는 재판에 100% 의존하면 이긴 쪽은 만만세이지만 진쪽은 전혀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회색사건을 회색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재(Arbitration)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어떤지? 지적재산협회도 그와 같은 해결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V. 인도에 대하여 생각한다

「일본 특허협회 최근 10년사」라는 책이 1974년에 간행되었습니다. 그 책의 139페이지를 보면, 인도 특허법개정에 수반된 인도국회에 있어서의 의견개진이라는 표제가 있어, 소화 41년(1966년) 7월에 경제인단체연합회 대표로서 이노우에 쇼이치(井上尚一)씨, 협회대표로서 본인이, 또 소화 44년(1969년) 1월에 본인이 인도국회에 갔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산협회쪽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억담의 하나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방문은 본인 한 사람이었으므로, 경제인단체연합회까지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션(Mission) 파견으로 된 것은 인도가 특허법을 약체화하고 특히 화학이나 의약 분야의 권리보호를 거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서 구미제국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물질특허제도를 그때까지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인도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당시 이미 일본은 특허보호하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입국화를 성공리에 진행시키고 있었으므로 일본인의 증언을 구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언은 웅대한 인도국회의 건물내에서 열린 인도공화국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행하였습니다. 얼마 안되는 대부호와, 국민의 대대수를 차지하는 빈곤자, 영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계급과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 마하라자와의 웅대한 궁전과 질반쯤 무너진 오두막집, 모두가 극단적인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인도이지만, 특허법을 약체화시켜서 어떤 국가이익과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특허만 없으면, 소련이 무상으로 기술을 가르치겠

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특허가 없어지면 의약품이 싸진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도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의약품의 95%는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두번째 인도방문시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았으며, 군사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대병기의 당당한 퍼레이드였습니다. 군용기1대를 구매하는 비용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약품을 살 수 있는지 인도정부는 계산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국련(國連)은 피임용구를 무상 배포하고 있으나, 아이를 낳더라도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남자는 피임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 있다라는 구제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인도는 결국 특허법을 약체화하였으나, 그같이 해서 인도의 산업경제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으며,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TRIPS에서 공업소유권제도의 근대화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가 그것을 이해할런지의 여부는 나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관개설비를 근대화하지 않으면, 인도국민의 생활수준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은 금일에도 그다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문화, 이슬람문화가 남긴 위대하고 훌륭한 조형미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래도 오늘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도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JICA가 주관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참가자의 3개월에 걸친 일본에서의 연수 종료식이 오사카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날 인도, 태국, 중국 방문여행에서 귀국하여, 3일 세미나의 모듈레이터를 역임했던 사카다이(阪大) 법학부장 에구치(江口) 교수에게 「인도는 어며

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던 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만 공업소유권 제도를 뿌리내릴 수 있게 될는지 결코 용이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8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이며, 원폭이나 미사일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빈곤합니다. 1991년 라오정권 탄생 이후 그때까지의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허제도에서의 대응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가 조사단파견을 고려해도 좋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 VI. PIPA의 창립과 오즈음

PIPA는 지적재산협회의 분신이라고도, 국제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PIPA는 사실상 일본인과 미국기업간의 단체이며, 유럽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PIPA가 결성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확실해집니다.

PIPA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WIPO에서 파리조약의 개정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WIPO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회의에 업저버로서 출석하기 위해서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특허협회(“지적재산협회의 당시 명칭임”)도 미국의 AIPLA도 업저버를 출석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계는 업저버로서 기업의 특허전문가를 출석시킬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허협회는 특별히 참석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일미(日美) 국제단체를 결성하는 일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고, 일미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미간의 국제단체의 설립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창립 제1회 총회가 도쿄의 테

이고쿠(帝國)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미국측은 이미 고인이 되신 IBM의 시프먼씨, GE의 캐리코오씨 등이며, 일본측은 지적재산협회측의 사오도메 쇼조씨, 일본IBM의 오노(小野) 특허부장(당시) 등이며, 본인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PIPA는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교대로 연1회의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일미(日美) 기업 상호간의 이해촉진과 개선에 크게 도움이 돼 왔습니다. 물론 PIPA 대표로서 파리조약개정에 관한 WIPO 의제회합에 참석해서 발언한다고 하는 목적을 완수해 왔음은 물론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WIPO 회의의 출석 자격이 완화된 지금에는 PIPA는 일미(日美) 기업간의 특허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중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PIPA의 메달리스트로서 회비만 지불하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성 6년(1994년)도의 하마마쓰(浜松) 총회에도 출석하여 총회의 토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담당자가 연구한 실로 훌륭한 보고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PIPA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마마쓰 총회때 미국측의 오래된 멤버와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는 PIPA에서는 최근 Fact Finding의 레포트가 많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나, 좀 더 일미(日美) 상호간의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특허부장 레벨의 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의있는 일이 아닐런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미(日美) 특허 마찰 문제는 특허청이나 통산성에 맡기고, 기업간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를 거의 행하지 않고 사실 조사 그 자체에 의거한 보고에 거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고 하면, 어딘지 부족한 감을 갖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를 논의했다

고 해서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한, 중요한 우호관계에 금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AIPLA팀이 일본에 왔을 때에 AIPPI와 변호사회가 합동으로 회합을 가졌으며, 본인도 출석했습니다. 이 때 일본측에서는 미국의 권리자가 일본의 침해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서 몹시 화가 난 사례 2건에 대하여 일본측 판단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일본측이 설명한 바와 같은 꽤 중요한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팀 리더는 레이만장관과 USPTO의 장관자리를 다투었던 아민테이주씨였으며, 그 아민테이주씨와 6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AIPPI 총회에서 재회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그는 일본의 판결등을 미국인은 읽을 수 없는 것이므로 영어로 해설한 소개 책자를 발간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겨우 3건의 판결을 영어로 번역하여 AIPPI 영문저널에 발표했을 뿐이므로 더 이상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 VII. 결론에 대신하여

추억이란 한이 없는 것이겠으나, 지면의 한계도 있으므로 추억은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본인은 누구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특별히 칭찬하려는 의도도 없고 본래부터 욕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원고작성이 지나쳐서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그런데, 지적재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일괄하여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협회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10년전까지는 공업소유권이라고 불려지고 있던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소유권제도가 세계적으로 깊이 관계가 있

는 것은 발명자, 고안자 등과 발명등을 실시하는 기업과 특허청과 변리사입니다. 그러나, 발명등이 없다면 특허청도, 변리사도 존재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므로, 발명자를 연구소에 데리고 있고 또한 발명의 공업화를 수행하는 일본의 기업은 특허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와 그 운용을 찾아서 타이밍 착오없이 주장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 특히 기업의 특허관리에 관한 유일한 단체인 지적재산 협회의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커다란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재산협회의 집행부는 이따금씩 각사가 직면하고 있는 개별문제의 이해에 입각한 의견이나 방향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제가 없다 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갖는 경제가치가 천연자원이 갖는 경제가치를 상회하게 된 오늘날,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각국의 이해가 일치하게 되는 일은 금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특허제도와 그 운용과 소송 전부에 있어서 마찰이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미국이 일본 기술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원유라고 하는 천연에너지자원을 사실상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기술자원에 대하여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싶다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대일 특허교섭에서의 주장도 그 원대한 계획과 방침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일본 국내를 보면, 도쿄 고등재판소의 한 개의 부가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재산협회 내에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찬성의견도 적지 않다고 어렵잖이 듣고 있습니다.

다. 고등재판소의 문제의 판결이나 이에 찬성하는 학자의 논문을 읽고 있으면, 이 사상의 흐름은 세계특허라고도 해야 할 특허제도, 즉 지금 더욱 발효할 전망이 확실치 않은 유럽의 공동체특허를 다시 전세계로 확산한 것 같은 특허제도 실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의 행방이야말로 일본국 특허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재산협회 중에 판결지지 내지는 여기에 무관심한 평의원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듣고, 전후 50년에 특허제도의 개념이 이렇게 변한 형태로 받아드린 것인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일본산업구조의 장래상이 특허관리에 발표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절실했던 요즈음입니다.

지적재산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 한이 「추억」 투고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며 팬을 놓는 바랍니다.

### VIII. 후기(後記)

일본의 전후 특허제도의 역사와, 중양회(重陽會) 사업자 공업소유권협회, 일본특허협회의 시대를 통하여, 지적재산협회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지적재산협회 명예참여인 사오도메 쇼조씨가 지난 8월 24일에 서거하였습니다. 사오도메 쇼조씨가 건강하다면 이 추억도 그분이 쓰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완성된 원고를 보여드리기 직전에 돌아가신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중 몇 개소에 사오도메씨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 「추억」을 그의 영전에 바치고 싶습니다.

(원고 수령일 평성 7년(1995년) 9월 8일)

발특 9609